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1. 7 선고 2023가단630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알, 담당변호사 안동하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1.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21. 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21. 1. 12. 접수 제4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청구취지는 이와 같이 선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9. 10. D에게 카드로 2,5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D는 2021. 3. 29. 위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1차전5963호로 위 대출금의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1. 5. 3. D에게 위 대출금의 원금 2,500만 원 및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1. 7. 20. 확정되었다.

나. 한편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21. 1. 11. 위 각 지분을 형인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2.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제43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무렵 D의 재산을 조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되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대출 원금 채권은 이미 성립하였고,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권도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갑4,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위 각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다. 피고의 악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것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법률상 추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보전채권의 금액에 비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 거액이므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가액반환에 의하게 되는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박무영

별지